

법무부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정성호 (법무부장관)
연 월 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구조금 신청인의 알 권리 및 구조결정에 대한 재심신청 등의 편의를 위하여 구조결정서 등 기존 서식을 개정하고, 재심신청서 등 실무상 자주 사용되는 서식을 신설하는 등 구조금 관련 실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조금 신청서 개정 (안 별지 제9호·제11호·제11호의2서식)

대리인을 통하여 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함

나. 구조결정서 및 결정통지서 개정 (안 별지 제13호·제14호·제15호서식)

구조결정서에 구체적인 구조금액 산정과정 이 드러나도록 하고 결정 통지서에 구조결정서 및 재심신청서를 첨부하도록 함

다. 신청인 표시표 개정 (안 별지 제10호서식)

여러 명의 유족이 함께 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그 중 한 명의 유족에게 신청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라. 재심신청서 및 위임장 신설 (안 제7조의3 및 제7조의4)

실무상 자주 사용되는 서식인 재심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을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및 제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재심신청)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재심신청서에 재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의4(위임장) 대리인을 통하여 구조금의 지급 또는 재심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위임장을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사업자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 기재함)			
	사업자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구조피해자와의 관계			
대리인	성명		주소	

구조 피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직업(근무처 명칭 및 소재지)		
	관할검찰청	00지방검찰청 (00지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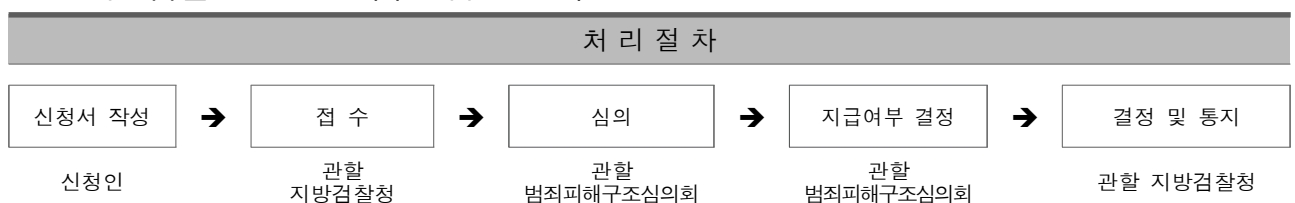
제1순위 유족	성명	구조피해자 와의 관계	주소

손해배상금 수령 여부	※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유 []무	※ '유'에 √ 표시한 경우 기재합니다. 수령한 손해배상금액 : 원
분할 지급 신청 여부	※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유 []무	※ '유'에 √ 표시한 경우 분할 지급 사유 및 희망 분할 횟수를 기재합니다.
긴급구조금 신청 사유		
신청인 계좌번호	은행 :	계좌번호 :
비고		

년 월 일
(서명)

신청인(대리인)

00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귀중



별지 제9호서식 뒤쪽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뒤쪽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동순위 유족이 같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청인 표시표
8.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 등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신청인, 같은 뒤쪽 및 같은 뒤쪽 중 “(대표자)”를 각각 “(대리인)”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1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청인 표시표

1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 기재 함)	
	사업자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구조피해자와의 관계
	연락처	은행 · 계좌번호
	위임장 ※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위 신청인(위임인) 는 신청인(수임인) 에게 아래 표시한 사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의 신청 [] 2.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및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	
	신청인(위임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위임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	
2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 기재 함)	
	사업자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구조피해자와의 관계
	연락처	은행 · 계좌번호
	위임장 ※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위 신청인(위임인) 는 신청인(수임인) 에게 아래 표시한 사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의 신청 [] 2.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및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	
	신청인(위임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위임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	
3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 기재 함)	
	사업자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구조피해자와의 관계
	연락처	은행 · 계좌번호
	위임장 ※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위 신청인(위임인) 는 신청인(수임인) 에게 아래 표시한 사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의 신청 [] 2.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및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	
	신청인(위임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위임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	

비고: 위 신청인 는 미성년자이므로 아래의 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함.

 (서명 또는 인)

[]장해구조금 · []중상해구조금 · []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잘 읽고 기입하십시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사업자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 기재함)		
	사업자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직업(근무처 명칭 및 소재지)		
대리인	성명	주소	
범죄피해	① 신체상의 장해(중상해) 부위 및 상태		
	② 기존 신체상의 장해 상태		
	관할검찰청	00지방검찰청 (00지청)	
손해배상금 수령 여부	※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유 []무	※ '유'에 √ 표시한 경우 기재합니다. 수령한 손해배상금액 : 원	
분할지급 신청 여부	※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유 []무	※ '유'에 √ 표시한 경우 분할지급 사유 및 희망 분할 횟수를 기재합니다.	
긴급구조금 신청 사유			
신청인 계좌번호	은행 :	계좌번호 :	
비고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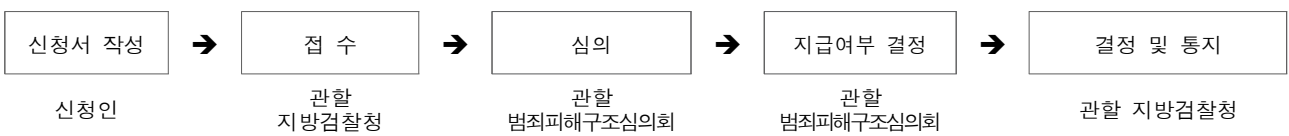
(서명)

00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귀중

유의사항

- 범죄피해 ①란에 작성할 내용이 첨부하는 진단서의 기재 내용과 같을 경우에는 “진단서와 같음”이라고 작성합니다.
- 범죄피해 ②란은 이미 신체상의 장해가 있는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동일한 신체부위에 대해 장해의 정도가 가중되어 중상해가 된 경우 작성하며, 작성할 내용이 첨부되는 진단서의 기재 내용과 같을 경우에는 “진단서와 같음”이라고 작성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인 첨부서류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신체상의 장애·중상해 부위 및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3. 신청인에게 범죄피해 발생 전에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애 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4. 중상해구조금의 경우에는 입원기간과 치료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원·퇴원 확인서 등의 서류 5. 범죄피해 발생 당시 신청인의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 6. 다음 각 목의 서류(신청인이 법 제23조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 해당 외국인이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합니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나. 해당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 또는 이 규칙 제5조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기본증명서(상세) 3. 입양관계증명서(상세)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5.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6.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신청인은 위 확인사항에 대해 아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아래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및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정보 제공 요구 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2. 기본증명서(상세) [] 3.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5.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6.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7. 국세 납세증명서 []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9. 소득금액증명 [] 10. 사업자등록증명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이 사무를 처리하기를 동의하는 항목에 √ 표시를 하고, 아래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및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요구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법무부·검찰청에서는 범죄피해구조금 이외에도 범죄피해자에 대해 다양한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측 QR코드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 안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구조금 지급업무 담당 기관에 업무처리 완료 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국세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 [] 1.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2.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유족 지급신청서
[]긴급구조금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명칭(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 기재함)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 기재함)		
	주소			
	구조피해자와의 관계			
대리인	성명	주소		
범죄피해	기존 구조금 신청 사건번호			
	구조 피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망일	년	월
제1순위 유족	성명	구조피해자 와의 관계	주소	
손해배상금 수령 여부	※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유 []무		※ '유'에 √ 표시한 경우 기재합니다. 수령한 손해배상금액 : 원	
분할지급 신청 여부	※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유 []무		※ '유'에 √ 표시한 경우 분할 지급 사유 및 희망 분할 횟수를 기재합니다.	
긴급구조금 신청 사유				
신청인 계좌번호	은행 :		계좌번호 :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첨부서류	1. 구조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구조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구조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신청인이 구조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인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6. 다음 각 목의 서류(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법 제23조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 해당 외국인이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합니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나. 해당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 또는 이 규칙 제5조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신체상의 장애·중상해 부위 및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8. 구조피해자에게 범죄피해 발생 전에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해 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9. 중상해구조금의 경우에는 입원기간과 치료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원·퇴원 확인서 등의 서류 10. 동순위 유족이 같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청인 표시표 1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동일 순위의 유족 2명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되, 중복되는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고, 구조피해자가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하였을 당시 지구심의 회에 제출했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기본증명서(상세) 3. 입양관계증명서(상세)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5.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6.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신청인은 위 확인사항에 대해 아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아래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및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정보 제공 요구 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2. 기본증명서(상세) [] 3.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5.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6.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7. 국세 납세증명서 []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9. 소득금액증명 [] 10. 사업자등록증명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이 사무를 처리하기를 동의하는 항목에 √ 표시를 하고, 아래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및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요구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구조금 지급업무 담당 기관에 업무처리 완료 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국세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1.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2.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처리 기관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참고사항

법무부·검찰청에서는 범죄피해구조금 이외에도 범죄피해자에 대해 다양한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측 QR코드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 안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심의



지급여부 결정



결정 및 통지

신청인

관할 지방검찰청

처리기관: 관할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관할 지방검찰청

구조결정서

사건번호	구심 년 제 호		
신청인	성명(한글)		성명(한자)
	생년월일		피해자와의 관계
	주소		
	위 신청인 대리인 성명		
피해자	성명(한글)		성명(한자)
	생년월일		
가해자	성명(한글)		성명(한자)
피해상황	일시 • 장소		
	피해정도		
결정일	년 월 일		
주문			
이유			

구조금액	기준 소득	기준 개월 수
	☐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원 ☐ 평균임금 원	개월
	공제 여부	감액 여부
	☐ 원을 공제한다. ☐ 해당 사항 없음	☐ %를 감액한다. ☐ 해당 사항 없음
	상한 적용 여부	동순위 유족
	☐ 적용한다. ☐ 해당 사항 없음	☐ 동순위 유족 명 ☐ 해당 사항 없음
	이미 지급한 구조금	
	☐ 원을 공제한다. ☐ 해당 사항 없음	

00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긴급구조결정서

사건번호	구심 년 제 호				
신청인	성명(한글)	성명(한자)			
	생년월일	피해자와의 관계			
	주소				
	위 신청인 대리인 성명				
피해자	성명(한글)	성명(한자)			
	생년월일				
가해자	성명(한글)	성명(한자)			
	생년월일				
피해상황	일시 • 장소				
	피해정도				
결정일	년 월 일				
주문					
이유					

구조금액	기준 소득	기준 개월 수
	☐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원 ☐ 평균임금 원	개월
	공제 여부	감액 여부
	☐ 원을 공제한다. ☐ 해당 사항 없음	☐ %를 감액한다. ☐ 해당 사항 없음
	상한 적용 여부	동순위 유족
	☐ 적용한다. ☐ 해당 사항 없음	☐ 동순위 유족 명 ☐ 해당 사항 없음
	이미 지급한 구조금	
☐ 원을 공제한다. ☐ 해당 사항 없음		

00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결정통지서

사 건 번 호	구심 년 제 호
신 청 인	성명
	주소

1. 귀하의 구조신청에 대하여 붙임 1 구조결정서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 본 심의회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본 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심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붙임 2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재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본 심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구조결정서 1부
2. 재심신청서 1부. 끝.

년 월 일장

00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위원장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의3(재심신청)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재심신청서에 재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u>
<u><신 설></u>	<u>제7조의4(위임장) 대리인을 통하여 구조금의 지급 또는 재심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위임장을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u>
제10조(법무부장관에의 보고) ① (생략) ② 지구심의회는 지난달의 신청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구조금 지급 월례보고서에 의하여 매월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에는 <u>별지 제18호서식</u>의 구조피해자 색인카드 및 제9조에 따른 구조결정서 등본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법무부장관에의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별지 제12호서식</u> <u>의 조사결과 보고서, 별지 제18호서식</u>----- -----.